

부천연구원설립계획

개 요

- 위 치 : 부천연구원
- 형 태 : 비영리재단법인
- 기 구 : 연구부, 교육부
- 인 력 : 10명(원장1명, 부장1명, 수석연구원1명, 연구원2명, 사무원5명)
- 재원조성 : 시 출연금 및 보조금
- 기 능 : 연구용역개발·기획, 연구용역기관선정자문, 용역결과평가·보완, 용역결과의 시책
화지원, 연구정보지 발간, 공무원 교육개발 및 운영 지원

1. 기본방침

- 가. 부천 지역 연구를 목적으로 함
- 나. 부천시청의 능력을 보완하여 그 기능 배가에 기여
- 다. 최소조직과 인력으로 최대효과 거양
- 라.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 출연 기금을 조성·운영

2. 설립 및 운영계획

가. 설립근거

- 민법 제32조(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)
- 내무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나. 기 능

- 연구부
 - 시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용역과제 개발 및 기획
 - 연구용역기관 선정자문
 - 연구용역결과 평가·용역의 추가보완

- 연구용역결과 시책화 지원
- 연구정보지발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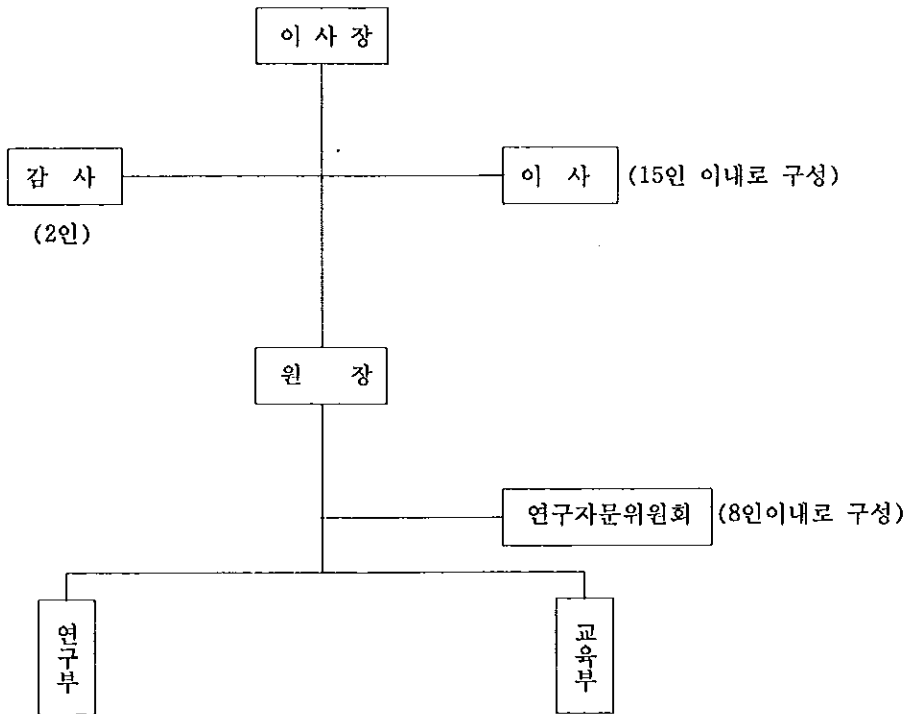
○ 교육부

- 공무원 자채교육·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
- 자채교육·훈련 프로그램의 진행 분담

다. 운영방법

- 소요운영경비는 조성된 기금의 이식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
- 연구부와 공무원 교육부로 나누어 운영
 - 연구부 : 용역결과물 실용화 가능에 역점
 - 교육부 : 세계화·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 운영지원

라. 기구표(안)



마. 인 력

- 연구직 : 4명(원장1, 수석연구원1, 연구원2)
- 사무직 : 6명(부장1, 일반사무원1, 교육운영요원2, w/p요원 2)

※ 소요인력 판단

| 부 별 | 직 책 | 인원 | 임 무 |
|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원 장 | 1 | • 연구원 업무총괄 |
| 연 구 부 | 수석연구원 | 1 | • 연구용역 업무총괄 |
| | 연 구 원 | 1 | • 연구용역 제반업무담당 |
| | W/P 요 원 | 1 | • 문서작성, 기타 |
| 교 육 부 | 부 장 | 1 | • 교육업무총괄 |
| | 연 구 원 | 1 | •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|
| | 교육운영요원 | 2 | • 교육운영담당 |
| | 사 무 요 원 | 1 | • 회계 및 내부사무담당 |
| | W/P 요 원 | 1 | • 문서작성, 기타 |

바. 조직운영

《이 사 회》

- 구 성 :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
- 기 능 : 연구원 운영의 중요사항 심의·결정
 - 사업계획, 예산·결산, 주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사항
 - 정관변경, 조직기구, 임원임면,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

《감 사》

- 구 성 : 2인(당연직 : 재정경제국장, 선임직 1인)
- 기 능 : 업무·재산상황감사 및 부정·부당사항보고

《원 장》

- 성 임 : 연구와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
- 임 무 : 연구원의 업무통괄과 소속직원의 임면 및 지휘·감독

《연구자문위원회》

- 구 성 : 8인이내(해당분야별 전문가, 관계공무원)
- ※ 별도 운영관리 규정제정, 구성운영

- 기 능 : 원장의 자문 및 심의

《연구부》

- 수석연구원 :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조사·연구 경력이 있는 자
- 연구원 :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조사·연구 경력이 있는 자
- 《교육부》
- 부 장 :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년 이상 조사·연구 경력이 있는 자, 또는 4급 이상 지방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
- 연구원 :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조사·연구 경력이 있는 자

3. 세부추진계획

가. 설립절차 이행

-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발기인 총회
 - 각계 각층의 유력인사 및 단체로 구성
 - 시 의회의원, 공무원
 - 대학교수
 - 금융기관, 상공관련단체, 시민단체·종교인 등
 - 연구원 설립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
 - 설립대표(발기인 대표)자 선임
 - 정관작성, 재산출연금방법 결정 등
- 설립허가신청 : 설립취지서 및 정관 등 구비, 도지사에게 신청
- 재산이전보고 : 설립허가를 받은 후 재산이전(이전후 1월내 보고)
- 설립 등 기 : 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후 3주이내(인천지법 부천지원)
- 설립등기보고 : 등기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(등기부등본첨부)
- 법인설립신고, 고유번호지정 : 이사장 → 세무서

※세부일정 : 별첨

나. 관련제규정 제정

- 부천연구원 정관
- 부천연구원 설치 및 육성조례
- 부천연구원 운영규정

다. 기금조성 및 운영비조달

- 기 금 : 목표액을 설정, 연차별로 조성

○ 조성목표액 : 50억원

- 97년도 : 10억원(추경예산확보)
- 98년도 : 20억원
- 99년도 : 20억원

○ 운 영 비 : 기금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되, 기금조성목표 완료시까지의 운영비 일부지원

라. 소요예산 ----- 1,357,800천원

○ 사무실임대 ----- 800,000원
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동 번지

- 확보방안 { 단 기 : 100평규모(사무실 : 40평, 상설교육장 : 60평)

{ 장 기 : 별도부지확보 및 건물신축

○ 장비 및 집기구입비 ----- 42,200천원

- 컴퓨터 : $3,000,000 \times 2대 = 6,000,000$
- 프린터 : $2,500,000 \times 2대 = 5,000,000$
- 소프트웨어(윈도우95외) : = 500,000
- 복사기 : $3,000,000 \times 1대 = 3,000,000$
- 팩 스 : $2,500,000 \times 1대 = 2,500,000$
- 전 화 : $500,000 \times 4대 = 2,000,000$
- 테이블 및 의자 : $300,000 \times 9조 = 2,700,000$
- 서 가 : $200,000 \times 3개 = 600,000$
- 캐비닛 : $100,000 \times 5개 = 500,000$
- 용접셀 : $1,000,000 \times 3조 = 3,000,000$
- 상설교육장(책상, 의자, 기타) = 10,000,000
- TV(VTR겸용) : $1,000,000 \times 1대 = 1,000,000$
- 컴퓨터 책상 및 의자 $200,000 \times 2조 = 400,000$
- 기타장비 = 5,000,000

○ 인건비 ----- 232,000천원

- 인원구성 : 10명(원장1, 부장1, 수석연구원1, 연구원2, 사무원5)
- 소요예산(년)
 - 원장(업무추진 및 관공비) : $500,000 \times 16월 = 8,000,000$

- 부 장 : $2,500,000 \times 1\text{명} \times 16\text{월} = 40,000,000$
- 수석연구원 : $2,500,000 \times 1\text{명} \times 16\text{월} = 40,000,000$
- 연 구 원 : $2,000,000 \times 2\text{명} \times 16\text{월} = 64,000,000$
- 사 무 직 원 : $1,200,000 \times 3\text{명} \times 16\text{월} = 57,600,000$
- W/P 요원(2명) : $700,000 \times 2\text{명} \times 16\text{월} = 22,400,000$

○ 운영비 ----- 283,600천원

- 사무비 : 월 $300,000 \times 12\text{월} = 3,600,000$
- 회의비 : $100,000 \times 10\text{인} \times 10\text{회} = 10,000,000$
- 평가비 : $15\text{건} \times 200,000 \times 10\text{인} = 30,000,000$
- 세미나·공청회 : $4\text{회} \times 7,000,000 = 28,000,000$
- 보고서 작성인쇄 : $4\text{회} \times 3,000,000 = 12,000,000$
- 교육비 : $200,000 \times 1,000\text{명} = 200,000,000$

부천연구원설립 세부일정계획

| 내 용 | 주 관 | 추진일정 | 비 고 |
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○ 연구원 설립 시의회 보고 - 총무위원회 - 시의회의장 상임위원장단 | 기획담당관실 | 97. 4. 25. ~ 5. 7. | |
| ○ 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- 위원구성 - 승낙서 청구 | 기획담당관실 | 97. 5. 10. | |
| ○ 발기인 창립총회개최 - 설립취지문 채택 - 정관제정, 이사회구성 -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| 기획담당관실 | 97. 5. 20. | |
| ○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| 시장 → 도지사 | 97. 5. 25. | |
| ○ 조례상정 | 시장 → 시의장 | 97. 6. 24. | |
| ○ 이사회 개최 - 원장, 감사선임 - 운영규정심의 - 97 사업계획심의 - 97 예산심의 | 이 사 장 | 97. 7. " | |
| ○ 법인설립등기 | 이사장 → 인천지법 | 97. 8. | 허가일로부터 3주이내 |
| ○ 법인설립등기보고 | 이사장 → 도 지 사 | " | 등기후 7일이내 |
| ○ 출연금(기본재산)명의변경 | 이사장 → 예탁금융기관 | " | 이전후 1월내 보고 |
| ○ 법인설립신고, 고유번호지정 | 이사장 → 세무서 | " | |
| ○ 연구원 발족, 현판식 거행 | 이사장, 원장 | 97. 9. 1. | |